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43회 임시회(2020. 9. 9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복지도시위원회

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20-119
----------	--------

2020. 9. 9.
전문위원 신준호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안 자 : 김영미 의원 외 17 인
- 나. 제 안 일 : 2020. 9. 2.
- 다. 회 부 일 : 2020. 9. 3.

2. 제안이유

마포구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제도가 전문성을 기반으로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사항을 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(안 제9조제3항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 「지방자치법」
 - 2) 「건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필요 없음.

다. 기타

1) 입법예고 : 2020. 8. 28.~ 9. 1.(의견 없음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 배경

-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하여 조례가 제정된 이후 마포구 주관 셉테드(CPTED)¹⁾ 사업 추진 시 경찰과의 협업 프로세스 정착을 위하여 제안되었음.

나. 주요 조문 검토

-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설치·운영에 있어서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 (안 제9조제3항)

다. 종합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가 제정(2018.5.3.) 시행된 이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위원회가 지역 경찰과의 협업이 미비하고 활동이 저조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발의된 사항으로,
-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시 경찰과의 협력 프로세스 정착을 위해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임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정하는 것임.
- 이는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의 기초 자료 확보를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디자인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, 전문성이 확보된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 기능이 유지되는 데 도움이

1) 범죄예방환경설계((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; CPTED)

될 것으로 판단됨.

- 현재까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개최 및 사업 건수는 없으며, 조례 제정 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차원의 벽화 사업은 아래와 같이 3건이 있음.

구분	사업명	위치	소요예산	사업기간
1	아현동 마을길 벽화 재생사업	마포대로 11길 73 공덕현대아파트 앞 옹벽	10,000천원	2019.8.~12.
2	연서지하보도 벽화 조성사업	성미산로 23길 78 인근 옹벽	9,000천원	2017.3.~6.
3	희망의 벽화공원 조성사업	성산로2길 마포구청역 3번 출구 앞 옹벽	22,000천원	2017.12.~ 2018.6.

〈표 1. 마포구 범죄예방 디자인 시행 내역〉

- 향후, 집행부에서는 관내 범죄예방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방법 시설 설치 등의 건축허가 조건을 개선하고 탄력 순찰과 같은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 관내 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겠음.

[관 계 법 령]

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「건축법」

제53조의2(건축물의 범죄예방)

-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,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-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.

「건축법 시행령」

제63조의2(건축물의 범죄예방)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
1. 다가구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
2.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
3.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
4. 문화 및 집회시설(동·식물원은 제외한다)
5. 교육연구시설(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)
6. 노유자시설
7. 수련시설
8.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
9.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